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 1997.12.29	개정 2005.09.01	개정 2014.08.01
개정 1998.07.07	개정 2007.03.01	개정 2015.09.01
개정 1999.02.09	개정 2011.02.01	개정 2017.12.04
개정 1999.10.01	개정 2011.08.01	개정 2020.06.12
개정 2001.10.01	개정 2013.02.01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및 위치) <개정 2013.2.1., 2014.8.1.><삭제 2015.9.1.>
- 제1조의2(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기관 운영, 예산편성 및 회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9.1.>
- 제2조(목적) <신설 2014.8.1.><삭제 2015.9.1.>
- **제2조의2**(소재지) 본원은 본 대학 내에 주사무소를 두되, 필요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9.1.>
- 제3조(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01.>
- **제4조**(지위) <신설 2014.8.1.><삭제 2015.9.1.>

제2장 운영조직

- **제5조**(원장) ①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 13.2.1., 2015.9.1.>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9.1.>
- **제6조**(교·직원) ① 본원에 소속된 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1.>
 - ② 교·직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소 지자로 배치한다. <개정 2011.2.1., 2015.9.1.>
 - ③ 본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 학습자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8.1.><개정 2015.9.1.>
- **제7조**(위원회)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8.1., 2015.9.1., 2017.12.04..>
 - 1.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회)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8. 1., 2015.9.1.>

- 가.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1.>
-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라. 시간제등록생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
- 마.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바. <삭제 2014.8.1.>
- 사. <삭제 2014.8.1.>
- 아. <삭제 2014.8.1.>
- 자. <삭제 2014.8.1.>
- 차.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04.>
- 카.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2.>
- 2. <삭제 2017.12.04.>
- 3. 본 대학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은 수원여자대학교 특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8.1.><개정 2015.9.1., 2017.12.04., 2020.6.12.>
-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단, 위원의 일부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2.1., 2015.9.1., 2017.12.04., 2020.6.12.>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겸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에 따른다. <신설 2014.8.1.><개정 2017.12.04..>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1.>
-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1.>

제3장 운영 <개정 2015.9.1.>

- 제8조(교육과정 설치) ① 본원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4.8.1.>
 - ② 교육과정은 학점인정 여부에 따라 학점인정 교육과정과 학점 불인정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학점인정 교육과정에는 학점은행제, 대학특별과정, 대학 비학위전공 심화과정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점 불인정 교육과정은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반교육과정과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위탁교육과정을 둔다. <신설 2014.8.1.><개정 2015.9.1.>
 - ③ 학점인정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관리지침에 따르며, 학점 불인정 교육과정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정별로 별도 정하거나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8.1.><개정 2015.9. 1., 2020.6.12.>
- 제9조(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제8조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효과, 교육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 칭하며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칭한다. <신설 2014.8.1.><개정 2015.9.1., 2020.6.12.>
- ②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총장 또는 원장 및 관련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개정 2020.6.12.>
- ③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총장 또는 원 장 및 관련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개정 2015.9.1., 2020.6.12.>
- 제10조(공개강좌) 본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1., 2015.9.1.>
- 제11조(학기, 휴업일 등)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기,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다만, 학점인정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2.1., 2014.8.1., 2015.9.1.>
- 제12조(학습자) ① 본원의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학습자라 칭하며 교육과정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학습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8.1.>
 - ② 본원의 교육과정의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점인정 교육과정의 수강을 위한 학습자는 모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8.1.><개정 2015.9.1.>
- 제13조(시간제등록생) <개정 2020.6.12.> ① 본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고등학교 졸업자 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1.8.1.>
 - ② 시간제등록생의 모집 및 선발, 학점인정 신청 제한,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간 제 등록생 운영규정에 따르며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칙과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1.8.1.><개정 2013.2.1., 2014.8.1.>
- **제14조**(학습비) ① 본원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소정 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습비의 반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8.1., 2015.9.1.>
- 제15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는 희망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8.1., 2015.9.1.>
 - ② 전항에서 별도의 수료기준을 정하지 않은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정한 총교육시간의 7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4.8.1>
- **제16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약간 명의 임원을 둔다.
- **제17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집단행동,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2011.2.1., 2015.9.1.>
- 제18조(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 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 **제19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2.1., 2015.9.
- **제20조**(예산편성) 본원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편성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예산편성 지침 및 운영방침에 따른다. <개정 2011.2.1., 2014.8.1., 2015.9.1.>
- 제21조(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9.1.>
 - 1. 학습비
 - 2. 본 대학 보조금 <개정 2014.8.1., 2015.9.1.>
 - 3. 위탁훈련 지원금 <개정 2015.9.1.>
 - 4. 기타 수입
- 제22조(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3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1., 2015.9.1., 2017.12.04..>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